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1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술교육관련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 나.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술교육센터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6]

1) 「문화예술교육 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3])

다. 협의 :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과 협의완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2) 입법예고(2019.2.21. ~ 3.14.) 결과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2]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4]

5)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예술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예술교육관련 센터(이하 “예술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예술교육센터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교육감은 예술교육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예술교육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예술교육센터의 운영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센터장을 지정한다.

④ 교육감은 예술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거나,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진흥 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생략)</p> <p>②·③ (생략)</p> <p><u><신설></u></p>	<p>제11조(진흥 사업)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2(예술교육센터) ① <u>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예술교육관련 센터(이하 “예술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예술교육센터는 제11조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한다.</u></p> <p>③ <u>교육감은 예술교육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예술교육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예술교육센터의 운영을 교육장에</u></p>

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센터장을 지정한다.

④ 교육감은 예술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거나,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첨 2】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별지 제5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예시)(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 제출의견 없음 ”	

【별첨 3】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기존 운영 중인 사업
- 조례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추계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제11조제1항제6호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기존 운영 중인 사업으로 조례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 추계 없음
 - 기 설치·운영 중인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및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등 예술관련센터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선언적 형식 조항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주무관 윤정현(02-399-9028)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조례안 규정	2019 예산 (단위:천원)	비 고																																						
제11조의2(예술교육센터) ①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 교육 진흥을 위해 예술관련 센터(이하 “예술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357,802	<p>▶ 사업명 :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은평)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내용 : 서부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 창의체험 공간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 치 : 은평구 가좌로208(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내) 프로그램 <table border="1" data-bbox="687 591 1359 965"> <thead> <tr> <th>구분</th> <th>융합·자유학기</th> <th>상시</th> <th colspan="2">특화</th> <th>특색별도</th> </tr> </thead> <tbody> <tr> <td>특징</td> <td>융합(사전신청)</td> <td>기초(오전,오후,전일)</td> <td colspan="2">상시프로그램의 심화</td> <td>예술캠프, 공연,전시</td> </tr> <tr> <td>차시</td> <td>12차시</td> <td>3,6차시</td> <td>6~12차시</td> <td>18~27차시</td> <td>동아리: 매주 토 공연전시: 월1회</td> </tr> <tr> <td>강좌</td> <td>9~16개</td> <td>16~25개</td> <td>매주 수요일</td> <td>방학특화</td> <td>-</td> </tr> <tr> <td>대상</td> <td colspan="2">초4~중3</td> <td colspan="2">초4~고1, 학부모, 교직원</td> <td>학생, 지역주민</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요예산 : 1,630,068천원 <table border="1" data-bbox="703 1039 1150 1178"> <tr> <td>프로그램운영비</td> <td>1,438,976</td> </tr> <tr> <td>보수공사비</td> <td>40,000</td> </tr> <tr> <td>기간제인건비</td> <td>19,637</td> </tr> <tr> <td>공과금 등</td> <td>131,455</td> </tr> </table>	구분	융합·자유학기	상시	특화		특색별도	특징	융합(사전신청)	기초(오전,오후,전일)	상시프로그램의 심화		예술캠프, 공연,전시	차시	12차시	3,6차시	6~12차시	18~27차시	동아리: 매주 토 공연전시: 월1회	강좌	9~16개	16~25개	매주 수요일	방학특화	-	대상	초4~중3		초4~고1,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프로그램운영비	1,438,976	보수공사비	40,000	기간제인건비	19,637	공과금 등	131,455
		구분	융합·자유학기	상시	특화		특색별도																																	
특징	융합(사전신청)	기초(오전,오후,전일)	상시프로그램의 심화		예술캠프, 공연,전시																																			
차시	12차시	3,6차시	6~12차시	18~27차시	동아리: 매주 토 공연전시: 월1회																																			
강좌	9~16개	16~25개	매주 수요일	방학특화	-																																			
대상	초4~중3		초4~고1,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프로그램운영비	1,438,976																																							
보수공사비	40,000																																							
기간제인건비	19,637																																							
공과금 등	131,455																																							
<p>▶ 사업명 :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성동)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내용 : 동북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 창의체험 공간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 치 : 성동구 마장로29길 29 (서울동명초 내) 프로그램 <table border="1" data-bbox="687 1449 1350 1850">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4">상시프로그램</th> <th colspan="3">별도프로그램</th> </tr> <tr> <th>심화</th> <th>자유학기(학년제)</th> <th>일일체험</th> <th>전환기</th> <th>방학캠프</th> <th>예술가연계</th> <th>자율연수</th> </tr> </thead> <tbody> <tr> <td>시기</td> <td>학기중 오전</td> <td>학기중 오후</td> <td>학기중 월요일</td> <td>전환기</td> <td>방학기간</td> <td>18~27차시</td> <td>9차시</td> </tr> <tr> <td>강좌</td> <td>4종</td> <td>4종</td> <td>4종</td> <td>4종</td> <td>6종</td> <td>8종</td> <td>2종</td> </tr> <tr> <td>대상</td> <td>초·중</td> <td>중</td> <td>초·중</td> <td>중·고</td> <td>초중고, 학부모</td> <td>학생, 학부모, 지역주민</td> <td>교사, 예술강사</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요예산 : 1,086,537천원 	구분	상시프로그램				별도프로그램			심화	자유학기(학년제)	일일체험	전환기	방학캠프	예술가연계	자율연수	시기	학기중 오전	학기중 오후	학기중 월요일	전환기	방학기간	18~27차시	9차시	강좌	4종	4종	4종	4종	6종	8종	2종	대상	초·중	중	초·중	중·고	초중고, 학부모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교사, 예술강사	
구분		상시프로그램				별도프로그램																																		
	심화	자유학기(학년제)	일일체험	전환기	방학캠프	예술가연계	자율연수																																	
시기	학기중 오전	학기중 오후	학기중 월요일	전환기	방학기간	18~27차시	9차시																																	
강좌	4종	4종	4종	4종	6종	8종	2종																																	
대상	초·중	중	초·중	중·고	초중고, 학부모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교사, 예술강사																																	

프로그램운영비	996,500
보수공사비	10,000
기간제인건비	19,637
공과금 등	60,400

- ▶ 사업명 :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운영(남부교육지원청)
- 사업 내용 : 남부권 학생들의 문화예술 창의체험 공간으로, 교육 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구로구 구로중앙로길48 (구로중 국제관동)
 - 프로그램

구분	상시		학교연계형		방학	공연형
	체험 프로그램	심화	자유학기	동아리	방학캠프	발표회
시기	1~3차시	16~32차시	8~16차시	학교 동아리 시수	6~8차시	6차시
강좌	2~3종	2~3종	8~10종	8~10개	3개팀	4개팀
대상	초5~고3	초5~고3	중1	중1~고3	초5~고3	프로그램 참여학생

- 소요예산 641,197천원

운영비	381,560
보수공사비	234,000
기간제인건비	19,637
공과금 등	6,000

【별첨 4】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개정)

1. 관련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나. 체육건강문화예술과-136(2019. 3. 5.)

2.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는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따라서 귀 과에서 의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1부.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감사관

주무관

청렴총괄담당사무
관

감사관

협조자

시행 감사관-2899 (2019. 3. 14.) 접수 체육건강문화예술과-797 (2019. 3. 14.)

우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2가, 서울특별시교육청) / <http://www.sen.go.kr>

전화 02-3999-149 /전송 02-3999-732 / pdh@sen.go.kr / 부분공개(5)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19A서울교육003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체육건강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윤정현	전화번호	02-399-9028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명	민경식	전화번호	02-399-9310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19년 03월 06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19년 03월 12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03월 12일</p>				

【별첨 6】

관련법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30호, 2017.3.21., 일부개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생략)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생략)